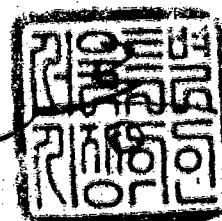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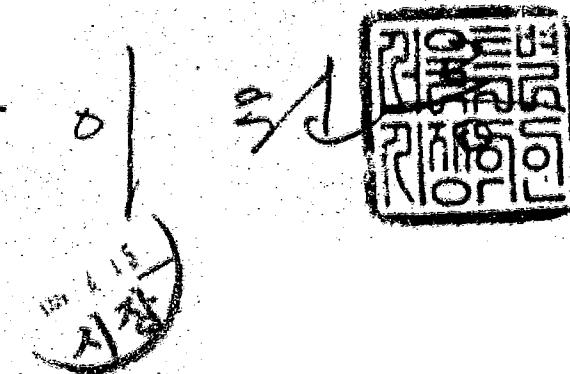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기방공무원연수교육증명

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19 94 년 2 월 15 일

##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안

###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 개정(제4,613호, '93.12.27)에 따라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중 일부를 시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고,  
아울러 인사규칙관련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임용권중 일부를 시의회사무처장에게 권한위임함 (안 제7조제1항).

-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 의회내 전보권,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 기능직공무원 : 신규임용, 의원면직
- 소속공무원의 승급

#### 나. 내부위임 및 권한위임된 임용권중 일부환원함 (안 제6조 및 제7조).

- 내부위임된 임용권 환원 : 면직, 신규임용, 시보임용해제
- 권한위임된 임용권 환원 : 휴직, 직위해제, 복직
- 소방본부장에게 소속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

#### 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변경함(안 제11조의 2), 지장 (안 제11조의 2)

- 5급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및 기능·별정·고용직 : 5천원

#### 라. 각종 시험시 구비서류를 변경·감축함(안 제11조제2항).

- 회종학력증명서 → 회종학력증명서 또는 그 사본
- 신원증명서 → 삭제

#### 마. 신규임용, 특별임용, 전직시험에 필요한 자격증 및 전직시험 면제 자격증 보완함(안 제19조 및 제2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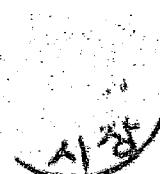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입용령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합의 : 필요없음

라.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서울특별시인사규칙증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인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① 시회회사무처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2.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보임용·해재 포함)·의원면직

3. 소속공무원의 승급

② 3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병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5급이하 공무원, 연구 및 지도직규정 별표2 제2호 나목 해당 연구관·연구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당해 기관내 전보

2. 교관임용 및 교과분야별 담당지정(공무원교육원장에 한함)

3. 소속공무원의 승급

③ 4급 및 5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농촌지도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당해 기관내 전보

2. 소속공무원의 승급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5급공무원의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에 관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의 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6층이상 공무원(인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월 : 1만원
2. 6층 및 7층공무원(인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월 : 7천원
3. 8층 및 9층공무원·기능직공무원·법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월 : 5천원

〈별표 2〉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를 벌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전직시험용시자격증 및 전직시험면제자격증구분표의 제1호 및 제2호나목중 "의료기기직류"란을 각각 삭제하고, 통표제1호중 "전산직렬"·통표제1호 및 제2호중 "약무직렬"·통표제1호중 "지적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산	전산	전자계산기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1급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1급 전자계산기조작용용 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설비기사 1급		전자계산기기사 2급 정보처리기사 2급 전자계산기조작용용기사 2급 정보통신설비기사 2급 전자계산기기능사 1급  정보통신설비기능사 1급
----	----	--	--	---

약무	약무	약사, 한의사	
	약제	약사, 한의사	

지적	지적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1급		지적기사 2급 지적기능사 1급
----	----	------------------	--	---------------------

〈별표 6〉 연구직 및 차도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에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1호중 본문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연구직 및 차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구분 및 전직시험에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구분 및 전직시험에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비교한 제1호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의 기술계의 기술사 및 기사는"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1의 기술계의 기술사·기사 및 통법시행령 별표2의 기능계의 기능장을"으로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11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별표 2·별표 5·별표 6·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2〉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11조 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공개경쟁신규 입용시험	승진시험	비고
1	채직증명서 1부		○	공개 경쟁 승진시험에 한함
2	회동학력증명서 또는 교사봉 1봉	○		해당자에 한함
3	주민등록초본 1봉	○		
4	체용신체검사서 1봉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
5	복무확인서 1부	○		현역군인에 한함
6	자격증(기술자격 수첩 포함)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	해당자에 한함
7	취업보호대상자 증명	○		국가유공자에 우통에 관한법률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 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8	학교생활기록관계 서류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9	시험요구서 1부		○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에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 (제19조 및 제22조 관련)

1. 졸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계급 직렬 직종	5급 이 상	6·7급	8·9급
기 반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유체 기계, 산업기계, 공조냉동 기계, 건설기계, 차량, 기계 공정설계, 용접, 금형, 기계 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기사 1급(건설기계, 일관리, 품질관리, 일반 기계, 소방설비, 산업안전, 공정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설계, 공조냉동기계, 사출 금형설계, 공정관리)  기능장(기계가공, 기계 정비, 금형제작, 용접, 자동 차정비, 증기정비, 고압가스 기계, 철도통역차)	기사 2급(건설기계, 개발 기계, 품질관리, 일반기계, 산업안전, 용접, 일관리,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 설계, 공조냉동기계, 공정 관리)  기능사 1급(기계가공,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용접, 자동차 정비, 증기정비, 농기계 정비, 고압가스기계, 고압 가스냉동기계, 철도통역 차기관정비, 재화차정비, 열차조작)
농 업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유체기 계, 산업기계, 공조냉동 기계, 건설기계, 차량, 기계 공정설계, 용접, 금형, 품질 관리, 기계안전)	기사 1급(농업기계, 일반 기계, 공조냉동기계, 품질 관리, 자동차검사, 자동차 정비, 증기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 설계)	기사 2급(농업기계, 일반 기계, 공조냉동기계, 품질 관리, 자동차검사, 자동차 정비, 증기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 설계)

직업 계급 직류	5급 이 상	6·7급	8·9급
		기능장(기계가공, 플형 제작, 기계정비, 배관, 용접, 세관, 자동차정비, 자동차 검사, 증기정비, 보일러)	기능사 1급(농기계정비, 기계가공, 프레스플형, 사출플형, 기계정비, 배관, 용접, 세관, 자동차정비, 증기정비, 보일러)
기계 운전	기술사(차량, 기계안전)	기사 1급(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산업안전, 치공구설계, 증기정비, 공조냉동기계, 공정관리) 기능장(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증기정비, 철도동력차)	기사 2급(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개량기계, 산업안전, 치공구설계, 증기정비, 공조냉동기계, 공정관리) 기능사 1급(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증기정비, 철도동력차기관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조선	기술사(조선설계, 선체, 선박기계)	기사 1급(조선, 선박기계)	기사 2급(조선, 선박기계) 기능사 1급(선체건조)
전기	기술사(발송배전, 전기기기, 전기용융, 철도신호, 품질관리, 전기안전)	기사 1급(전기, 전기공사, 품질관리, 철도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 기능장(전기기기, 전기공사)	기사 2급(전기, 전기공사, 품질관리, 철도신호, 산업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1급(전기기기, 전기공사, 전기설비)

계급 직렬		5 급 이상	6 · 7 급	8 · 9 급
전 자	전 자	기술사(공업계측 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기사 1급(전자, 공업계측 제어, 품질관리, 전자계산기, 전자기계기초작용용) 기능장(전자기기)	기사 2급(전자, 공업계측 제어, 품질관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초작용용) 기능사 1급(전자기기, 전자계산기, 공업전자기기)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 1급(원자력)	
금 속 야 금	금 속	기술사(철아금, 비철아금,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비파괴검사)	기사 1급(금속, 품질관리, 비파괴검사) 기능장(금속재료, 주조, 도금, 압연, 재선, 재강, 코크스)	기사 2급(금속, 품질관리, 비파괴검사) 기능사 1급(금속재료, 주조, 원형, 도금, 압연, 재선, 재강, 코크스)
	설 유 유	기술사(방사, 방직, 제포, 압색가공, 생사, 의류)	기사 1급(방사, 방직, 품질관리, 의류) 기사 2급(생사) 기능장(염색)	기사 2급(방사, 방직, 품질관리, 의류) 기능사 1급(염색)
화 학 공 장	일 반 화 학	기술사(공업화학, 고분자제품,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요업, 화학안전)	기사 1급(화공, 공업화학, 화학류제조, 소방설비, 품질관리, 요업, 산업안전) 기능장(위험물취급, 고압가스화학)	기사 2급(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소방설비, 품질관리, 요업, 산업안전) 기능사 1급(위험물취급, 고압가스화학)

직렬	개급 직류	5 층 이 상	6 · 7 층	8 · 9 층
자 원	기자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발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기사 1급(황산, 황산보안, 화약류관리, 시추, 석재,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기사 2급(황산, 화약류 관리, 황산보안, 시추, 석재, 해양조사)
농	일 반 농 업	기술사(식품, 종묘)	기사 1급(식물제조, 원예 종묘, 식물보호)	기사 2급(식물제조, 원예 종묘, 식물보호) 기능사 1급(식품가공)
	잡 임	기술사(생사)	기사 1급(방사) 기사 2급(생사)	기사 2급(방사)
임	식 물 방 역	기술사(식품, 종묘)	기사 1급(식품제조, 원예 종묘, 식물보호)	기사 2급(식품제조, 원예 종묘, 식물보호) 기능사 1급(식품가공)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기사 1급(농화학)	
임	일 반 임 업	기술사(종묘, 영립, 조경)	기사 1급(일업종묘, 영립, 조경)	기사 2급(일업종묘, 영립, 조경) 기능사 1급(영립, 일산 가공)
임	산 림 보 호	기술사(종묘, 영립)	기사 1급(일업종묘, 영립)	기사 2급(일업종묘, 영립) 기능사 1급(영립)
	가 공 이 용	기술사(임산가공)	기사 1급(임산가공)	기사 2급(임산가공) 기능사 1급(임산가공)
축 산	축 산	기술사(축산)	기사 1급(축산)	기사 2급(축산) 기능사 1급(식품가공)

계급 직렬	5·6·7·8·9급 직류	5·6·7·8·9급 직류	5·6·7·8·9급 직류	
수 산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양식 어로 수산물조사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 1급(수산제조, 해양 조사, 해양자원개발, 수질 환경, 어병방역, 어로, 수산양식)     	기사 2급(수산제조, 해양 조사, 수질환경, 어로, 수산양식)     기능사 1급(식품가공)
식 품 위 생	식품위생	기술사(식품, 포장, 품질 관리, 축산, 농화학, 수산 제조)	기사 1급(식품제조, 축산, 농화학, 수산제조, 포장, 품질관리)	기사 2급(식품제조, 축산, 수산제조, 포장, 품질관리)  기능사 1급(식품가공)
보 건	보건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기사 1급(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제조)	기사 2급(식품제조,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환경 경 경	일반환경 환경	기술사(폐기물관리, 수질 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공업화학, 고분자 재활용, 화학장치설비, 화학 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기사 1급(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토목, 건설, 개료시험, 전기, 전기공사, 농화학, 기상, 식품제조, 도시계획, 조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병방역, 어로,	기사 2급(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목,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전기, 전기공사, 식품제조, 조경,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환산, 화약류관리, 석재, 일관리, 영림, 식물보호,

직렬	계급 최류	5급 이 상	6·7급	8·9급
		토목물질시험, 발송배전 전기기기, 전기용품,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농화학, 영집, 지구물리, 식품, 음용지질,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도시계획, 조경, 지하자원 개발,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수산제조, 영집, 식품보호, 산업위생관리, 원자력, 열관리, 황산, 화약류관리, 석재, 음용지질) 기능장(위험물취급, 전기 기기, 전기공사)	식품제조) 기능사 1급(위험물취급, 전기기기, 전기공사, 전기 설비, 영집, 식품가공)
수 질		기술사(수질관리,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 설계, 농어업토목,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기사 1급(수질환경, 화장, 공업화학, 농화학, 해양 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 공학, 수산양식, 어병방역, 어로, 수산제조)	기사 2급(수질환경, 공업 화학,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데 기		기술사(매기관리, 소음 진동,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농화학, 지구물리)	기사 1급(대기환경, 소음 진동, 농화학, 기상, 원자력, 열관리)	기사 2급(대기환경, 소음 진동, 열관리)
폐 기 물		기술사(폐기물처리, 공업 화학, 고문자제품, 화학 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 선관리, 농화학, 지구물리, 해양, 화약류관리, 산업 위생관리)	기사 1급(폐기물처리, 화광, 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화약류관리, 농화학, 해양자원개발, 해양조사, 해양공학, 산업위생관리, 원자력, 열관리)	기사 2급(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화약류관리, 열관리)

직렬	개별 직류	5급 이 상	6·7급	8·9급
교 통	교 통	기술사(교통, 토시계획, 조경, 축자, 항만및해안, 토로및공학, 철도, 건축 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전기설비, 건설안전)	기사 1급(교통, 토시계획, 조경, 축자, 토목, 건축, 설비, 건설안전)	기사 2급(조경, 축자, 토목, 건축설비, 건설안전)
항 공	일반 항공	기술사(항공기체, 항공 기관)	기사 1급(항공) 기능장(항공정비)	기사 2급(항공) 기능사 1급(항공정비)
도 시 기 획	도 시 기 획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 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 도, 토목시공, 도시계획, 축자, 조경, 지적, 교통, 건축구조, 건축시공)	기사 1급(토목, 축자, 지적, 도시계획, 조경, 건축, 교통) 기능장(건축시공)	기사 2급(토목, 축자, 지적) 기능사 1급(지적)
토 목 · 수 도 토 목	일반 토목 · 수 도 토 목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 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도시계획, 축자, 조경, 지적)	기사 1급(토목, 축자, 건설재료시험, 도시계획, 지적, 조경, 건설안전)	기사 2급(토목, 축자, 건설재료시험, 조경, 지적, 건설안전)

개급 직별	직류	5급 이상	6~7급	8~9급
농업 토목		기술사(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질및기초, 토복구조,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기사 1급(토목, 토지)	기사 2급(토목, 토지)
건축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소방설비)	기사 1급(건축, 건축설비, 의장,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시공, 목공)	기사 2급(건축, 건축설비, 의장,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1급(건축시공, 목공)
지적	지적	기술사(지적)	기사 1급(지적)	기사 2급(지적) 기능사 1급(지적)
측지	측지	기술사(측지)	기사 1급(측지)	기사 2급(측지)
통신사	통신사	기술사(전기통신, 정보통신)	기사 1급(전파통신, 정보통신설비) 기능장(통신설비)	기사 2급(전파통신, 정보통신설비) 기능사 1급(선로설비, 정보통신설비)
통신기술		기술사(전기통신, 정보통신)	기사 2급(유선설비, 정보통신설비) 기능장(통신설비) 115 115 기능사 1급(선로설비, 정보통신설비)	기사 2급(유선설비, 정보통신설비) 기능사 1급(선로설비, 정보통신설비)
전송기술		기술사(전기통신, 정보통신)	기사 1급(무선설비, 정보통신설비) 기능장(통신설비)	기사 2급(무선설비, 정보통신설비) 기능사 1급(전송설비, 정보통신설비)

계급 직별	직류	5급 이상	6·7급	8·9급
전자통신기술	전자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기사 1급(전자, 전파전자, 정보통신설비) 기능장(통신설비)	기사 2급(전자, 전파전자, 정보통신설비) 기능사 1급(정보통신설비)
전산	전산	기술사(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작응용, 정보통신)	기사 1급(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작응용, 정보통신설비)	기사 2급(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작응용, 정보통신설비) 기능사 1급(전자계산기, 정보통신설비)



〈별표 7〉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별별임용을 위한 자격증구분 및 전직시험에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 및 22조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직렬 번호	개별 종류	인 쿠 관	인 쿠 사
1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유체기계, 산업기계, 공조냉통기계, 전설기계, 차량, 기계공장설계, 용접, 플형)	기사 1급(일반기계, 철토차량, 건설기계, 풍기장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풍정설계, 차량구설계, 정밀측정, 공조냉통기계, 용접, 농업기계, 프레스플형설계, 사출금형설계, 품질관리)
2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전기기기, 전기용융, 철도신호)	기사 1급(전기, 전기공사, 품질관리, 철도신호)
3	전 자	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용융, 전자계산기)	기사 1급(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품질관리)
4	금 속	기술사(철야금, 비철야금,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비파괴검사)	기사 1급(금속,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5	기 수	기술사(방사, 방직, 제포, 염색가공, 생사, 외류)	기사 1급(외류, 방사, 방직, 염색가공, 품질관리) 기사 2급(생사)
6	화 공	기술사(공업화학, 고분자제품, 화학장치설비, 요업, 화학광장설계, 식품)	기사 1급(화공, 공업화학, 요업, 식품제조, 품질관리)

개급 직렬		연 구 관	연 구 사
농 업 연 구	농업 연구	기술사(식품, 농화학)	기사 1급(식물보호, 식품제조, 농화학)
	원예 연구	기술사(종묘, 농화학)	기사 1급(원예종묘, 식물보호, 농화학)
	일업 연구	기술사(영업, 일산가공, 농화학)	기사 1급(영업, 식물보호, 일산가공, 일업종묘, 농화학)
	창업 연구	기술사(생사)	생사기사 2급
	축산 연구	기술사(축산, 식품)	기사 1급(축산, 식품제조)
	수의사		
기 축 위 생 연 구	수의사		
	농공 연구	기술사(기계제작, 유체기계, 차량, 공조냉동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품질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기사 1급(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중기정비, 차공구설계, 농업기계, 정밀 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자동금형 설계, 토목, 조경, 품질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비파괴검사)
보 건 연 구	보 건 연 구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 관리, 소음진동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간호사, 조산사, 위생사 1급, 위생시험자 1급,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복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기사 1급(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 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제조)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2급, 위생시험자 2급, 영양사

직렬	개급 작류	연 구 관	연 구 사
한 경 연 구	한 경 연 구	<p>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고분자재품,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및기초, 항만및해안, 토목및공항, 철도,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응용지질, 지하자원개발, 밀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지구물리, 도시계획, 조경, 영림, 식품,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재조,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 관리, 산업위생관리, 화광암전)</p> <p>의사, 약사, 수의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자, 위생사1급, 위생시험사1급</p>	<p>기사 1급(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화약류관리, 건설재료시험, 토목, 항산, 도시계획, 조경, 영림, 식물보호, 식품제조, 농화학, 해양조사, 해양자원 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병방역, 어로, 수산재조, 원자력, 일관리, 산업 안전, 산업위생관리, 기상, 응용지질) 위생사2급, 위생시험사2급, 영양사)</p>

2. 자도직종부원

직렬 개별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기술사(종묘, 식품, 농화학)		기술사(원예종묘, 식물보호, 식품 제조, 농화학)	
농 촌 자 도	농업	기술사(영업, 종묘, 일산가공, 농화학)	기사 1급(원예종묘, 식물보호, 일산가공, 농화학, 조경)	
	임업	기술사(기술사(생사))	기사 2급(생사)	
	원예	기술사(종묘, 농화학)	기사 1급(원예종묘, 식물보호, 조경, 농화학)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 1급(축산, 식품 제조)	
	농업 기계	기술사(기계제작, 유체기계, 산업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차량, 기계공정 설계, 용접, 기계안전)	기사 1급(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자동차정비, 중기정비, 차공구 설계, 용접, 농업기계, 산업안전, 계량 기계, 소방설비, 품질관리, 일관리)	
	농업 토목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구조,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건설안전, 측지, 조경)	기사 1급(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측지) 기사 2급(토목, 측지)	
어 촌 자 도	어 촌 자 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 1급(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해양물학) 기사 2급(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병방역,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비 고 : 원표를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동직렬 동직류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제6조(내부위임) ①사장은 3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병원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p> <p>1. 5급이하공무원, 연구 및 지도직규정 별표2제2호 나목 해당 연구관·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면직</p> <p>2. 6급이하공무원, 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 의 신규임용 및 시보임용해제</p> <p>②4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농촌 지도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p> <p>1. 6급이하공무원,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 의 면직</p> <p>2. 7급이하공무원,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 의 신규임용(특별임용을 제외한다) 및 시보임용해제</p> <p>③5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p> <p>1. 7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면직</p> <p>2. 8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 임용(특별임용을 제외한다) 및 시보임용 해제</p>	<p style="text-align: center;">&lt; 삭제 &gt;</p>

## 현    행

## 개    정    안

- ④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소속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보임용·해제·당해 기관내의 전보·휴직·직위해제·복직 및 면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 ⑤사업소장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신규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규임용시험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임용과 9급보건직(방사선·병리·물리분야에 한한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제1항의 규정은 5급이상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외의 국가공무원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①3급이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5급이하공무원, 연구 및 지도직규정 별표2 제2호 나목 해당 연구관·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당해 기관내 전보·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2. 교관임용 및 교과분야별 담당지정(공무원교육원장에 한함)
3. 소속공무원의 승급

제7조(권한의 위임) ①시의회사무처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2.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보임용·해제 포함)·의원면직
  3. 소속공무원의 승급
- ②3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보건환경연구원장 및 병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현 행	개 정 안
<p>② 4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농촌지도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6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당해 기관내 전보</li> <li>2. 6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li> <li>3. 소속공무원의 승급</li> </ol> <p>③ 5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6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당해 기관내 전보</li> <li>2. 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li> <li>3. 소속공무원의 승급</li> </ol> <p>④ 제1항의 규정은 5급공무원의 직위해제·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소속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11조의2(응시수수료) (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급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2,000원</li> <li>2. 6급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000원</li> </ol>	<p>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급이하공무원, 연구 및 지도직규정 별표2 제2호 다목 해당 연구관·연구사 및 기능직공무원의 당해 기관내 전보</li> <li>2. 교활임용 및 교과분야별 담당지정(공무원교육원장에 합함)</li> <li>3. 소속공무원의 승급</li> </ol> <p>④ 4급 및 5급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사업소장(농촌지도소장을 포함한다.)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6급이하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당해 기관내 전보</li> <li>2. 소속공무원의 승급</li> </ol>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5급공무원의 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11조의2(응시수수료)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 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li> <li>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 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li> <li>3. 8급 및 9급공무원·기능직공무원·별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li> </ol>